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상사조정제도와 활용 - WIPO조정을 중심으로*

Recent Trends and Us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Focused on the WIPO Mediation

이로리**
YI, LORI

〈 목 차 〉

- I. 서론
- II. 지식재산권 분쟁과 국제상사조정 의의
- III.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조정제도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지식재산권, 국제분쟁, 국제상사조정, WIPO중재조정센터, 조정 규칙

* 본 논문은 저자가 수행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콘텐츠 분야 국제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연구」, 2019.11 연구용역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한 논문임을 밝힌다. 본 논문에 대하여 유익한 코멘트를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lori05@kmu.ac.kr.

I. 서론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지식재산권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식재산권이 상품에 체화된 채 거래가 되는 등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수반되는 국제분쟁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¹⁾ WIPO에 보고된 ‘기술(Technology), 미디어(Media) 및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분쟁에 관한 조사보고서(TMT Survey, 2016)’²⁾에 따르면 TMT(기술, 미디어, 전기통신)는 광범위한 상품 및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데, TMT 국제계약은 그 수나 복잡성에 있어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제적 차원의 TMT 프로젝트는 특허, 상표, 소프트웨어 또는 노하우(know-how)를 포함하는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지식재산권 분쟁은 계약 관련 분쟁(예: 지식재산권 이전/양도, 이용계약 관련 분쟁) 또는 비 계약적 분쟁(예: 지식재산권 성립 자체에 관한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및 관련 손해 배상 분쟁 등)이며, 민사 또는 상사분쟁이 주를 이룬다. 그러한 분쟁은 주로 당사자 간의 협상이나 제3자가 개입하는 소송, 중재, 조정 등의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데, 협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은 소송이며, 그것은 국내 분쟁뿐만 아니라 국제분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제소송의 경우 재판관할권의 문제, 준거법을 지정하는 문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제반 소송비용의 부담이 있으며, 재판한 국가의 법원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각국의 지식재산에 관한 실체법의 내용과 소송법 체계가 달라 어느 국가에서 재판하느냐에 따라 소송절차 진행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다르고, 판결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제분쟁이 발생하면 막상 국제소송을 통해 해결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으며, 그러한 장벽으로 인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분쟁 해결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은 무체재산권의 특성을 가지므로 접근이 이루어지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용될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분쟁은 국제성을 갖는다. 김용길, “지식재산권분쟁의 재판외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9, p.70.

2) 위 보고서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기술, 미디어 및 전기통신 분야의 분쟁 해결의 이용에 관한 동향을 보고하고 있다.

3) 동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이전 과거 5년 동안 응답자들이 경험한 TMT 분쟁의 가장 흔한 유형은 ① IP 관련 분쟁(50%), ② 합작투자(joint-venture)/동업 협력(39%), ③ 라이선싱(37%), ④ 정보기술(IT) 개발/실행/통합(35%), ⑤ 비밀유지/비공개 약정(NDAs, 20%), 및 ⑥ 아웃소싱 관련 분쟁(14%) 순으로 나타났다. Ignacio de Castro · Leandro Toscano · Andrzej Gadkowski, “An Update on International Trends in Technology, Media and Telecom Dispute Resolution,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53 les Nouvelles 116, June 2018, p.2.

이에 비해 국제중재는 관할권 중립성이 보장되고, 중재합의, 중재기관, 중재인선정, 중재절차 및 중재지 선정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며, 중재절차의 비밀성이 유지되고, 단심제로 분쟁을 해결하여 국내 재판절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중재판정을 외국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제소송에 대한 대안으로 주로 활용되었다.⁴⁾ 중재는 소송과 유사하게 판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면서, 실정법뿐만 아니라 업계의 관행, 형평과 선도 중재판정의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타당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있어 소송보다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된다.⁵⁾ 그러나 국제중재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중재판정이 내려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장기가 되는 경향이 있어 비용, 시간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국제중재의 장점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⁶⁾

그동안 국제조정은 국제중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는데,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국제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더라도 조정의 결과로 도출된 국제적 화해 합의에 집행력이 확보되지 않아서였다. 조정당사자 일방이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다른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관할 법원이 있는 국가에서 다시 소송이나 중재절차를 통해서 합의의 집행력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 12월 20일 UN총회에서 ‘UN국제조정화해합의협약’(이하 ‘싱가포르조정협약’이라 함)⁷⁾과 함께 ‘국제상사조정 및 조정의 결과로 도출된 국제적 화해합의에 관한 UNCITRAL모델법’⁸⁾이 채택되었고, 2020년 9월 20일 발효됨에 따라⁹⁾ 국제조정을 통한 국제적 화해 합의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국제조정이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주요한 절차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¹⁰⁾ 동 협약은 국제적 화해 합의 집행을 위한 조화된 골

- 4)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1958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 함).
- 5) 최송자, “지적재산권분쟁의 중재적격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1. 8, p.30.
- 6) 국제중재의 경우, 중재인에 따라 규모가 큰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무한정 수용한다거나,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세부 규칙이 없어 중재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와 포르투갈 회사의 국제중재 사건의 경우 약 5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하홍준 외 4인, “지적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09, p.11, 각주8), 이주연,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의 활성화 방안 - 국내 ADR기관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3. 6, p.117 재인용.
- 7) UN국제조정화해합의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이하 ‘싱가포르조정협약’이라 함).
- 8) 국제상사조정 및 조정의 결과로 도출된 국제적 화해합의에 관한 UNCITRAL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이러한 모델법의 채택은 각 국가들의 국내입법에 참조가 됨으로써 규범의 통일화와 국제적 보편성을 꾀할 수 있다. 이재민, “국제조정을 통한 합의서 집행협약의 도입과 법적 쟁점”,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11, p.1264.
- 9) UN국제조정화해합의협약 제14조에 따르면, 동 협약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의 세 번째 문서 기탁일로부터 6개월 후 발효된다. 2021년 4월 현재까지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는 6개국(Singapore, Qatar, Saudi Arabia, Belarus, Ecuador, Fiji)이다.
- 10)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화해 합의로는 (a) 개인, 가족 또는 가사의 목적으로 일방 당사자가 참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결된 화해 합의; (b) 가족법, 상속법 또는 노동법과 관련된 화해

격을 제시하고, 그 합의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이 동 협약을 원용할 수 있게 한다. 동 협약의 주된 목적은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있으며,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의 결과로 도출된 국제적 화해 합의에 적용된다.¹¹⁾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지식재산권 분야의 분쟁 조정제도¹²⁾는 대체로 행정형 조정으로 국내 분쟁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고¹³⁾, 조정의 결과로 성립된 조정 합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¹⁴⁾ 싱가포르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은 싱가포르조정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국내에는 동 협약에 부합하는 국제조정 서비스 경험이 있는 기관이 거의 없으며,¹⁵⁾ 국제조정 인프라 또한 부족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식재산권의 가치 실현범위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점차 국제화되는 상황에서¹⁶⁾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부상하는 한국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국제조정산업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싱가포르협약 비준 이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조정’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국제조정산업을 육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국제조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는 국내의 국제상사조정제도의 인프라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분쟁 해결에 국제조정 이용을 장려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분쟁 및 국제상사조정 의의를 살펴보고, 동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조정기관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의

합의; (c) 법원이 승인하였거나 법원의 절차 중에 종결된 화해 합의; (d) 해당 법원의 국가에서 판결로서 집행 가능한 화해 합의; (e) 기록된 중재판정으로서 집행 가능한 화해 합의가 있다. 싱가포르조정협약 제1조 제2항-제3항.

- 11) “What is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홈페이지, 접속일 2021. 2. 4, <http://www.singaporeconvention.org/about-convention.html>.
- 12)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법 제112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발명진흥법 제41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반도체)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5조),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 등.
- 13)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중재조정센터 간 체결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저작권·콘텐츠 분야의 국제분쟁 사건을 공동분쟁해결절차에 따라 WIPO중재조정센터에 소개하여 처리하게 하고, 조정제도의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조정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WIPO와 국가의 국내 법원 및 지식재산기구와의 구체적인 협력 개관은 WIPO, WIPO Guide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p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and Courts, 2018, pp. 51-55 참조.
- 14)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법 제117조제2항),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산업진흥법 제33조제4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발명진흥법 제46조제2항),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반도체)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제5항) 등.
- 15) 2020년 10월 2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의 국제조정센터(KIMC, Korea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가 설립되었다. 이순규, “기업간 국제분쟁 국제조정으로 해결...국제조정센터(KIMC)출범”, 「법률신문」, 2020. 10. 27자, 접속일 2021. 4. 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5270>.
- 16) 이주연, *supra* note 6, p.166.

국제상사조정제도와 활용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의 국제상사조정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지식재산권 분쟁과 국제상사조정의 의의

1. 지식재산권 분쟁

(1)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무체물(無體物)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그 침해가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식이나 정보는 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지식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되기 쉽다. 즉, 그 지식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자가 그 권리자를 물리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외국에서도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쉽다.¹⁷⁾

WIPO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을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장,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밖에 산업, 과학, 문화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⁸⁾ 2011년 7월 20일 발효된 한국의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¹⁹⁾ 지식재산권은 지적 창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인격적 재산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간의 창작적 노력 또는 투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그 결과 지적 창작물의 확대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²⁰⁾

17) 김홍석,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ADR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29.

18) WIPO 설립조약 제2.8조.

19)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제3호.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와 상호, 지리적 표시, 산업디자인, 영업비밀 등이 있고, 저작권에는 좁은 의미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있다. 최경수, 「국제지식재산권법 (개정판)」, 한울, 2017, p.21.

20) 최경수, Ibid., p.23.

(2) 지식재산권 분쟁

지식재산권의 분쟁유형은 크게 지식재산권의 존재, 지식재산권 계약,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분쟁 등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²¹⁾ 첫째, 지식재산권 존재에 관한 분쟁은 지식재산권의 성립(유효성 포함) 범위 소멸 등과 같은 분쟁을 포함한다. 둘째,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분쟁은 지식재산권 라이선스계약, 지식재산권 이용계약, 지식재산권 개발계약, 지식재산권 양도·담보제공계약 등의 분쟁을 포함한다. 셋째,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분쟁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분쟁으로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원상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민사적 구제와 그 밖의 형사처분 등의 형사상 구제, 행정조정,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의 행정적 구제 등이 있다.²²⁾

지식재산권 분쟁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분쟁 해결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 둘째, 분쟁 해결의 신속성이 요구된다는 점, 셋째, 해결 과정에서의 비밀보호가 요구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WIPO의 기술계약분쟁에 있어서 ADR 활용에 관한 한 조사(2013)에 따르면, 해당 산업계는 ① 중립적 분쟁 해결 포럼, ② 신속한 해결, ③ 비용 효율적 해결, ④ 분쟁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 ⑤ 합의의 국제적 집행을 원한다고 답하였다.²³⁾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 국제조정은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분쟁의 해결방식이 될 수 있다.²⁴⁾ 그 이유는 첫째, 각국의 사법제도 차이의 장벽에 상관없이 조정에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관할권 중립적인 분쟁해결절차라는 점, 셋째,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지원으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넷째, 분쟁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실정에 가장 잘 부합하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다섯째, 관련 산업 내에서 또는 사업적 관계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경우,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으면서도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 여섯째, 분쟁 해결 과정에서 비밀유지가 가능한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조정협약이 1958년 뉴욕협약처럼 앞으로 많은 당사국을 확보한다면 국제중재와 비교하여 국제조정 활용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합의의 국제적 집행력’도 보장될 수 있다.

21) 고윤석, 「지식재산권 국제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133.

22) *Ibid.*

23) 기술계약 분야의 ADR 사용평가를 목적으로 한 WIPO중재조정센터의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조사(2013) 참조. WIPO, Results of the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International Survey on Dispute Resolution in Technology Transactions, 2013.

24) 2020년 싱가포르 국제분쟁해결 아카데미의 분석에 따르면,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자들은 조정의 해결 속도(이용자의 68%)와 비용(이용자의 65%) 측면에서 소송의 해결속도(이용자의 45%)와 비용(이용자의 48%)과 중재의 해결속도(이용자의 30%)와 비용(이용자의 25%) 보다 월등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박노형,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이행법률 제정관련 제언”, 「법률신문」, 2021. 4. 19. 자, 접속일 2021. 4. 26,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69339>.

2. 국제분쟁과 국제상사조정

(1) 국제분쟁

국제분쟁(cross-border disputes)에 관한 국제사회의 통일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분쟁을 정의한 국제문서로 2008년 EU 국제 민·상사조정지침(Directive 2008/52, 이하 ‘EU국제조정지침’이라 함)의 국제분쟁에 관한 정의에 따르면, 동 지침이 적용되는 국제분쟁은 “당사자가 분쟁에 제기된 후 조정을 이용하기로 합의한 날; 법원에 의해 조정이 명령된 날; 국내법에 따라 발생된 조정의 이용 의무일; 또는 (동 지침 5조의 목적상) 법원이 당사자에게 조정을 제안한 날짜에 적어도 당사자 중 일방이 주소²⁵⁾를 한 회원국 내에 두거나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의 분쟁”이다.²⁶⁾

(2) 국제상사조정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2018)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국제상사조정(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으로 정한다. 조정이 ‘국제적’이라는 의미는 첫째, 조정의 합의 당사자들이 해당 합의를 체결할 당시에 서로 다른 국가들에 그들의 영업소들을 가지는 경우이다. 둘째, 당사자들의 영업소들이 있는 국가가 ① 당사 관계의 의무의 상당한 부분이 이행되어야 하는 국가, 또는 ② 분쟁의 주제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와 다른 경우이다. 이때 일방 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들을 갖는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영업소를 조정의 합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장소로 한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영업소를 갖지 않는 경우 그 당사자의 상거소가 참조되어야 한다.²⁷⁾ 더 나아가 당사자들이 조정이 국제적이라고 합의하거나 모델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상사조정의 적용 가능성에 합의하는 상사조정 역시 마찬가지로 취급되며, 당사자들은 모델법상 국제상사조정의 적용 가능성의 배제 역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²⁸⁾ 동 모델법은 재판 또는 중재절차 중에 판사 또는 중재인이 화해를 촉진하고자 시도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²⁹⁾ 이를 조건으로, 분쟁이 제기되기 전 또는 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합의, 법으로 설정된 의무, 또는 법원이나 중재재판부, 소관 정부 기관의 지시나 제의를 포함하여 조정이 수행되는 근거에 상관없이 동 모델법이 적용된다.³⁰⁾

“상사”의 의미는 그것이 계약적 성격이든 아니든 상사의 성격을 갖는 모든 관계에서 발

25) 이 경우 주소는 일명 ‘브뤼셀협약’ (Brussels Convention)인 Regulation (EC) No 44/2001의 제59조와 제60조에 따라 결정된다.

26) EU국제조정지침 제2(1)조.

27) UNCITRAL국제상사조정모델법(2018) 제3조 제3항.

28) UNCITRAL국제상사조정모델법(2018) 제3조 제4항-제5항.

29) UNCITRAL국제상사조정모델법(2018) 제3조 제7항.

30) UNCITRAL국제상사조정모델법(2018) 제3조 제6항.

생하는 사안을 대상으로 하여 폭넓게 해석한다.³¹⁾

한국의 경우 민사조정법을 포함하여 다수의 조정 관련법에는 ‘조정’ 자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조정의 목적이나 조정기관, 조정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조정 관련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문서 또는 국제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정기관의 조정 규칙은 대체로 ‘조정(mediation)’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조정이 지향하는 분쟁 해결방식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표 1〉 국제문서에서 정의된 조정의 의미

국제문서	조정(mediation)의 정의
WIPO 조정규칙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조정인)에게 그들의 분쟁에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협상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요청하는 절차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2002) ³²⁾ (*conciliation)	conciliation, mediation 또는 다른 유사한 의미의 표현으로 언급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들이 계약 또는 기타 법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들의 분쟁의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시도에 있어 제3자 또는 제3자들에게 그들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UNCITRAL국제상사조정 및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모델법(2018)	*조정에 관한 정의는 2002년 UNCITRAL 조정모델법과 동일 **다만, mediation이라는 단어가 보다 실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2002년 조정모델법상 조정을 지칭하던 ‘conciliation’을 ‘mediation’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함
UN국제상사조정화해합의협약 (2018, 싱가포르조정협약) ³³⁾	이용된 표현이나 절차가 수행되는 근거와 무관하게 분쟁당사자들에게 해결을 부과할 권한을 갖지 않는 제3자 또는 제3자들(‘조정인’)의 지원을 받아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의 분쟁의 우호적 해결에 도달하도록 시도하는 절차
EU국제조정지침 (2018) ³⁴⁾	어떠한 명칭이든, 둘 이상의 분쟁당사자들이 스스로, 자발적 근거로, 조정자의 지원으로 그들의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체계적인 절차

31) UNCITRAL국제상사조정모델법(2018) 각주1 참조.

32)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2002년) 제1.3조. 해당 조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For the purposes of this Law, “conciliation” means a process, where referred to by the expression conciliation, mediation or an expression of similar import, whereby parties request a third person or persons (“the conciliator”) to assist them in their attempt to reach an amicable settlement of their dispute arising out of or a relating to a contractual or other relationship. The conciliator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impose upon the parties a solution to the dispute.” United Nations (UN),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 with Guide to Enactment and Use 2002 (2004). 위의 정의에서 사용된 “조정은 conciliation, mediation 또는 다른 유사한 의미의 표현으로 언급되는 지 여부에 상관없이”라는 문구는 동 모델법이 절차에 부여된 이름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으며, 조정에 대한 절차적 스타일 또는 접근을 구별할 의도가 없음을 나타낸다.

33)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34)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이하 ‘EU국제조정지침’이라 함) 제3조(a).

(3) 국제적 화해 합의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

싱가포르조정협약(2018)과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2018)은 공통적으로 국제상사조정의 결과로 도출된 서면의 ‘국제적 화해 합의’에 적용되는데, 동 합의는 종결 당시 ‘국제적’이어야 한다. 위 문서들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a) 화해 합의에 대한 적어도 두 당사자가 그들의 영업소들을 다른 국가들에 갖는 경우; 또는 (b) 화해 합의에 대한 당사자들이 그들의 영업소들을 갖는 국가가 다음의 어느 한 국가와 다른 경우: (i) 화해 합의에 따른 의무의 상당한 부분이 이행되는 국가 또는 (ii) 화해 합의의 주체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 일방 당사자가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상거소가 참조되어야 한다.”³⁵⁾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2018)은 위와 같은 규정의 목적에서 일방 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경우, 기준이 되는 영업소는 당사자들에게 알려진 상황을 고려할 때 화해 합의로 해결된 분쟁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거나 화해 합의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그러한 것으로 고려한 장소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⁶⁾

III.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조정제도

1. WIPO중재조정센터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상사분쟁조정기관으로 WIPO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이하 ‘ICDR’이라 함),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라 함)³⁷⁾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세계적인 ADR기구들은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 조정, 중재 등 ADR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³⁸⁾ 다음에서는 WIPO조정중재센터를 중심으로 조정기관의 역할, 조정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다.

35) 싱가포르조정협약 제2조;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2018) 제3조 제1항-제3항, 5항.

36)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2018) 제16조 제5항.

37) ICC는 1919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기관으로 1932년부터 분쟁업무 처리하고 있다. ICC의 모든 조정은 ICC ADR국제센터(ICC International Center for Arbitration and Mediation)에 의해 관장되며, ICC조정규칙(ICC Mediation Rules)에 따른다. ICC ADR국제센터는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조정, 전문가 평가(expert appraisal) 및 분쟁이사회(dispute boards)의 다양한 우호적인 분쟁 해결의 절차적 골격을 제공한다. 동 센터는 경험 있는 국제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을 직접 처리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 초안 작성에 대한 지원도 제공한다.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홈페이지(<https://iccwbo.org/>) 참조.

38) WIPO, WIPO Guide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p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and Court, 2018, p.13.

(1) 개관

WIPO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촉진할 목적으로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UN의 전문기구다. 1994년에 WIPO 내에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문화된 ADR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분쟁 해결 서비스 기관인 WIPO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가 설치되었는데,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싱가포르에도 사무소(Maxwell Chamber)를 두고 있다.³⁹⁾ WIPO 중재조정센터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쟁⁴⁰⁾ 관리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동 센터는 관련 WIPO규칙에 따라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⁴¹⁾, 신속 중재(expedited arbitration)⁴²⁾, 전문가 결정(expert determination)절차를 관장하고 있다.⁴³⁾

WIPO중재조정센터는 ADR절차와 관련하여, 조정 회의를 포함하여 다음의 일반적 서비스를 제공한다.⁴⁴⁾ ①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험을 가진 1,500명 이상의 전문가 풀(pool)에서 중립인의 선정 지원, ② 최적의 의사소통 및 절차적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당사자와 중립인 간의 연결, ③ 당사자 및 중립인과 협의하여 중립인의 수수료 확정을 포함하여 절차의 재정적 측면 관리, ④ 사건관리서비스 및 WIPO전자사건시설(Electronic Case Facility)⁴⁵⁾에 대한 접근, ⑤ 제네바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무료 회의실 제공 및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경우 물류 서비스, ⑥ 번역, 통역 또는 사무국 서비스를 포함하여,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지원 서비스, ⑦ WIPO조정, 전문가 결정, 중재 및 신속중재규칙의 적용에 관

39) WIPO,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접속일 2021. 2. 24, <https://www.wipo.int/amc/en/center/background.html>.

40) WIPO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는 WIPO의 권고를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표장, 상호, 이름 등 다양한 유형의 도메인 네임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 손승우, 「저작권 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p.8.

41) 중재는 당사자들의 중재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할 분쟁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계약상의 사전 합의가 있었거나 새로운 중재합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재의 결과인 중재판정은 조정안과 달리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따라서 판정은 최종적이며, 불복청구는 금지된다. WIPO 중재규칙은 중재합의, 중재인 수,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택, 공정성 및 독립성, 중재인 적임성에 대한 이의제기, 비밀유지, 임시처분, 판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WIPO의 중개수수료는 등록 수수료, 행정수수료, 중재인 수수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록 수수료는 분쟁가액과 무관하게 신속중재 미화 1,000달러, 중재 2,000달러이다. 행정수수료와 중개수수료는 분쟁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기 상한선을 설정하여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특히 신속 중재의 경우 분쟁가액 미화 1,000만 달러 이하에는 확정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WIPO,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접속일 2021. 2. 24, <https://www.wipo.int/amc/en/center/background.html>.

42) WIPO신속중재절차는 중재와 비교했을 때 중재 요청에 대한 답신 및 변론 진술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심리를 최장 3일로 제한하며, 모든 절차를 3개월 내로 종결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답변서 교환도 1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단독 중재인을 통한 절차 진행 및 고정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동 절차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추구하며, 중재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WIPO,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접속일 2021. 3. 24, <https://www.wipo.int/amc/en/center/background.html>.

43) WIPO, *supra* note 38, p.13.

44) *Ibid.*, pp.26-27.

45) WIPO전자사건시설(WIPO ECAF)은 WIPO가 관리하는 사건의 당사자 및 모든 기타 주체들이 그 사건의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사건 통지문을 보내고, 온라인 서류제출 시스템을 통하여 당사자들 정보에 접속할 수 있다. WIPO ECAF는 대부분 여러 차례의 서류 교환을 수반하는 조정절차에서 사용된다. *Ibid.*, p.27.

한 안내, 면책,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인, WIPO 및 센터는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 조정에 관한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⁴⁶⁾

WIPO는 국가의 지식재산권기관(Intellectual Property Office)와 협력하여 지식재산권과 기술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하는 ADR의 장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기 위하여 공동분쟁해결절차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폴란드의 IPO기관들에 의해 관리되는 분쟁에 대하여 ADR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⁴⁷⁾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중재조정센터는 2018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제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에 대한 공동분쟁해결절차를 확립하였다. 동 절차는 2개 이상의 관할권이 관련된 국제분쟁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로 2019년 5월 1일부터 국제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당사자는 조정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조정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⁴⁸⁾

(2) 운영 현황

ADR중재조정센터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약 650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2014년 이후 분쟁 사건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2016년부터는 처리 사건 수가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서면서 2016년 114건, 2017년 136건, 2018년 15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⁴⁹⁾ 그러한 분쟁해결절차의 대상 사안은 계약적 분쟁과 비 계약적 분쟁을 모두 포함한다.⁵⁰⁾ WIPO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비율은 70%,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비율은 40%로 나타났다.⁵¹⁾

WIPO ADR 사건의 분야별 비중을 보면, 특허(27%), ICT(23%), 상표(20%), 상사(18%), 저작권(12%) 순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은 전체 사건 중 12%를 차지하며, 주로 미술, 방송, 집단관리, 엔터테인먼트, 영화 및 미디어, 침해, TV포맷에 관련된 분쟁이었다.⁵²⁾

WIPO에 제기된 ADR사건의 분쟁유형을 분류하면 ① 라이선싱협정(상표, 특허,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 ② 연구개발협정, ③기술이전협정, ④유통계약, ⑤ 프랜차이즈협정, ⑥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⑦정보처리협정(data processing agreements), ⑧ 합작투자협정(joint venture agreements), ⑨자문계약(consultancy agreement), ⑩ 아트마케팅계약(art marketing agreement), ⑪ TV 유통 및 포맷(TV distribution and format), ⑫

46) WIPO조정규칙 제26조.

47) WIPO, *supra* note 38, pp.24-25.

48) 공동분쟁해결절차는 방송, 공동제작, 유통, 엔터테인먼트, 영화, 미디어, 정보기술통신, 라이선싱, 음악, TV포맷,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조정은 WIPO조정규칙에 따른다. 세계일보, “문화부 저작권 콘텐츠 국제분쟁, 조정제도 활용하세요”, 2019년 5월 23일자 인터넷판 기사.

49) WIPO, WIPO Caseload Summary, 접속일 2021. 3. 2, <https://www.wipo.int/amc/en/center/caseload.htm>.

50) *Ibid.*

51) *Ibid.*

52) *Ibid.*

영화제작, ⑬저작권수집관리(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등이 있다.

WIPO의 ADR사건들은 압도적으로 계약조항에 근거한 사건들이지만, 일부 사건들은 분쟁이 발생한 후에 부탁 합의의 결과로 WIPO ADR에 제출되었다. WIPO센터에 제출된 조정, 중재 및 신속 중재의 40%는 WIPO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속적으로 WIPO중재 또는 신속 중재를 규정하는 신속조항(escalation clause)을 포함하고 있다.⁵³⁾

ADR사건의 당사자들을 보면, 산업, 분야를 넘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예술가, 발명가, R&D 센터, 대학, 제작자 및 수금조합(collecting societies)도 포함되었다. 당사자들은 다른 관할권에 있었는데, 국가별로 보면 알제리,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벨리즈, 브라질,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레바논, 북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말타,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나마,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한국, 루마니아, 러시아연합,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지니, 터키, 아랍에미리트연합, 영국, 미국, 잠비아 등이 있었다. WIPO ADR사건의 분쟁금액은 15,000달러(USD)에서 10억 달러(USD)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⁵⁴⁾

WIPO ADR 절차가 가장 많이 시행된 곳은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이다. WIPO ADR절차는 중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 이태리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진행된다.⁵⁵⁾

2. 조정규칙과 조정인의 역할

(1) 조정규칙

WIPO 조정규칙⁵⁶⁾은 특히 지식재산권, 기술 및 관련 상업적 분쟁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조정과정에서 공개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비밀유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⁵⁷⁾ WIPO중재조정센터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또는 미래의 분쟁당사자들의 WIPO중재조정센터 이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WIPO조정규칙은 축약된 표현(제1조), 규칙의 적용 범위(제2조), 조정 개시(제3조-제6조), 조정인의 임명(제7조-제8조), 당사자의 대리 및 회의 참가(제9조), 조정의 수행(제10조-제13조), 조정인의 역할(제14조), 비밀유지(제15조-제18조), 조정의 종결(제19조-제21조), 행정

53) *Ibid.*

54) *Ibid.*

55) *Ibid.*

56) WIPO조정규칙 (WIPO Mediation Rules)(<https://www.wipo.int/amc/en/mediation/rules/>, 2021년 3월 26일 방문).

57) WIPO조정규칙 제14조-제17조.

수수료(제22조), 조정인 수수료(제23조), 보증금(제24조), 비용(제25조), 책임의 배제(제26조), 명예훼손 면제(waiver of defamation, 제27조), 시효 규정에 따른 시효중단(제28조) 등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조정인의 역할

조정인은 적절하다고 믿는 모든 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분쟁 쟁점의 화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에게 화해를 강제할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당사자 간에 분쟁이 되는 어떤 쟁점이 조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믿는 경우, 조정인은 분쟁 상황이나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며 비용이 적게 들고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쟁점 해결의 절차나 방법을 당사자들에게 고려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조정인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i)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결정; (ii) 중재; (iii) 각 당사자의 최종 화해 제안의 제출 및 조정을 통한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최종 제안에 기반한 중재. 후자의 경우 중재 판정부의 임무를 제출된 최종 제안 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한다.⁵⁸⁾

3. 조정절차

(1) 조정개시

조정은 당사자들의 자기결정에 기초한 절차로, 당사자 간에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한 기존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조정 합의 (mediation agreement)는 계약상 미래의 분쟁을 조정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기존의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전형적으로 조정 합의는 언급된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한 합의, 조정에 제출될 분쟁에 관한 기술, 조정장소, 조정에 사용될 언어, 조정의 조건 및 절차에 적용 가능한 조정 규칙 등을 포함한다.⁵⁹⁾

당사자 간 조정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기 쉽도록 WIPO중재조정센터는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인 조정요청서(Request for Mediation)를 제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요청서가 접수되면, WIPO센터는 당사자들이 그 요청을 고려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고, 요청에 따라 요구되는 지원을 제공하도록 외부의 중립인을 임명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절차는 특히 침해 분쟁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등 다수의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이용하였다.⁶⁰⁾

58) WIPO조정규칙 제14조.

59) WIPO, *supra* note 38, p.23.

60) *Ibid.*, p.24.

조정을 개시하고자 하는 조정 합의의 당사자는 센터에 서면으로 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동시에 조정요청서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조정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거나,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i) 분쟁당사자들과 신청인 측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전화,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연락처; (ii) 조정합의서의 사본; 그리고 (iii) 분쟁 내용에 대한 간단한 진술.⁶¹⁾

조정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을 조정에 회부 할 것을 제안하고 싶은 당사자는 센터에 조정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조정요청서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⁶²⁾

조정의 개시일은 센터가 조정요청서를 받은 날로 한다.⁶³⁾ 센터는 즉시 당사자들에게 조정요청서의 접수 사실 및 조정 개시일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⁶⁴⁾

(2) 조정인 선정과 임명, 변호사 대리

당사자들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한 명의 조정인을 선정하고, 임명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에 당사자들이 원하면 두 명 이상의 공동 조정인을 임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의 경우, 당사자들은 관련된 법적, 기술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한 명의 조정인을 임명하는 것이 선호될 수 있다. ADR기관은 조정인 패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정인의 선정 및 임명을 지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조정인을 임명할 수도 있다.⁶⁵⁾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여 조정인을 선정하였거나 별도로 조정인 선정 절차에 합의하는 경우 외에 조정인 선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i) 센터는 각 당사자에게 동일 후보자 목록을 보내야 한다. 목록은 보통 3인 이상의 후보자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기재하며 각 후보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조정인의 특별한 자격요건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목록에는 그러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포함한다. (ii) 각 당사자는 선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의 이름을 삭제할 권리가 있으며,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순위를 붙일 수 있다. (iii) 각 당사자는 목록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표시한 목록을 센터에 반송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표시한 목록을 반송하지 않은 당사자는 목록에 있는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iv) 센터는 당사자로부터 목록을 받은 후, 또는 당사자로부터 반송이 없는 경우 위의 기간(목록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 경과 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자가 표시한 순위 및 이의를 고려하여 목록에 있는 사람 중 1인을 조정인으로 선정한다. (v) 반송된 목록에 따

61) WIPO조정규칙 제3조.

62) 조정요청서에는 제3조 (b)항 (i)호 및 (iii)호에 규정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WIPO조정규칙 제4(a)조.

63) WIPO조정규칙 제5조.

64) WIPO조정규칙 제6조.

65) WIPO, *supra* note 38, pp.24-25.

라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센터가 조정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센터로부터 조정인으로 초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조정인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그 밖의 사유가 있어 보이고, 목록에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더 없는 경우에도 센터는 조정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재량에 따라 앞의 절차가 해당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인을 달리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조정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선정을 수락함으로써, 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⁶⁶⁾

당사자는 대리되거나 조정인과의 회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는 조정인 선정 후 즉시 자신을 대리할 권한을 수여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자신을 대리하여 조정인과 당사자 간의 회의에 참석할 사람의 성명 및 지위를 상대방, 조정인과 센터에 전달해야 한다.⁶⁷⁾

(3) 조정수행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그 한도에서 조정인은 이 규칙에 따라 조정을 진행할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⁶⁸⁾ 당사자는 조정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조정인과 협력하여야 한다.⁶⁹⁾ 조정인은 자유롭게 각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다. 단, 그러한 만남 및 연락은 그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상대방에게 공개되면 안 된다는 분명한 이해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⁷⁰⁾

조정인은 선정된 후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각 당사자가 조정인과 상대방에게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한 일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진술서에는 분쟁의 배경, 분쟁과 관련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주장, 분쟁의 현재 상황, 그리고 조정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분쟁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정보와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조정인은 조정 진행 중 언제든지 조정인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것을 당사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당사자는 비밀로 하고자 하는 문서나 자료를 조정인만이 검토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조정인에게 제출할 수 있다. 조정인은 해당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허락 없이는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⁷¹⁾

66) WIPO조정규칙 제7조.

67) WIPO조정규칙 제9조.

68) WIPO조정규칙 제10조.

69) WIPO조정규칙 제11조.

70) WIPO조정규칙 제12조.

71) WIPO조정규칙 제13조.

(4) 비밀유지

WIPO조정규칙은 특히 지식재산권, 기술 및 관련 상사분쟁을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조정과정 중 공개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비밀유지 규정을 포함한다.⁷²⁾ 당사자와 조정인 사이의 어떠한 회의에 관해서도 기록은 일체 남기지 아니한다.⁷³⁾

조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특히 조정인, 당사자, 그 대리인 및 자문인, 독립된 전문가, 그리고 그 밖에 당사자와 조정인 간의 회의에 출석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은 조정의 비밀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당사자와 조정인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에 관한 정보 또는 조정절차 중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은 조정에 참여하기 전에 적절한 비밀유지 협약서에 서명해야 한다.⁷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조정이 종료됨과 함께 당사자가 제공한 모든 준비서면, 문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사본을 남기지 않고, 제공한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당사자와 조정인 사이의 회의에 관하여 작성된 기록은 조정의 종료 시에 파기하여야 한다.⁷⁵⁾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인과 당사자는 어떠한 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다음 사항을 증거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형태로도 들여서는 안 된다: (i) 분쟁의 가능한 화해 방안으로서 당사자가 표명한 견해 또는 제안; (ii)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인정한 사항; (iii) 조정인이 한 제안이나 표명한 견해; (iv) 당사자가 조정인 또는 상대방의 화해 제안을 수락할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v) 당사자 간의 화해 합의(settlement agreement), 다만, 그러한 합의의 집행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이거나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⁷⁶⁾

(5) 조정의 종료

조정은 (i) 당사자 간의 분쟁 쟁점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화해 합의서(settlement agreement)에 당사자들이 서명한 경우, (ii) 더 이상의 조정 노력에 의하더라도 분쟁이 해결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인이 조정 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iii)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종료를 선언하는 경우 종료된다.⁷⁷⁾

조정이 종료되면, 조정인은 즉시 조정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센터에 서면으로 통지를 보내야 하고, 조정이 종료된 날 조정이 화해 합의로 귀결되었는지 여부, 만약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그 화해가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것인지 표시하여야 한다. 조정인은 센

72) WIPO, *supra* note 38, p.27.

73) WIPO조정규칙 제15조.

74) WIPO조정규칙 제16조.

75) WIPO조정규칙 제17조.

76) WIPO조정규칙 제18조.

77) WIPO조정규칙 제19조.

터에 보내는 통지서의 사본을 당사자에게도 보내야 한다. 센터는 조정인에 의한 위 통지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분쟁 합의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이거나 법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허락 없이 누구에게도 조정의 존재 및 그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센터는 그 활동에 관하여 공표하는 집합적인 통계 데이터에 해당 조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당사자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분쟁의 구체적인 상황을 특정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⁷⁸⁾

법원에 의한 요구가 있거나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인은 해당 분쟁 대상에 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사법, 중재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서도 조정인 이외의 다른 자격으로서 관여할 수 없다.⁷⁹⁾

(6) 다른 절차와의 관계

당사자들은 준거법이 인정하는 한, 조정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정이나 그에 상응하는 규칙에 따른 소멸시효의 진행이 조정 개시일부터 조정 종료일까지 중지되는 것에 동의한다.⁸⁰⁾

(7) 조정비용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 수수료, 조정인 수당 및 그 밖의 조정비용(특히, 조정인의 필요한 여비와 전문가 자문을 얻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은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한다.⁸¹⁾

WIPO 중재조정센터의 조정비용은 당사자 및 조정인들과의 합의에 의한다. 다만, 전체 분쟁가액의 0.10%가 행정수수료로 부과되는데, 이때 수수료의 최고 상한 가액은 미화 10,000달러이다. 조정인의 수수료 또한 상한 가액과 하한 가액이 정해져 있는데, 하한 가액은 시간당 미화 300달러, 하루당 미화 1,500달러이며, 상한 가액은 시간당 미화 600달러, 하루당 미화 3,500달러이다.

78) WIPO조정규칙 제20조.

79) WIPO조정규칙 제21조.

80) WIPO조정규칙 제28조.

81) WIPO조정규칙 제25조.

IV. 결론

국제조정은 중립적 분쟁 해결 포럼으로서 신속한 해결, 비용 효율적 해결, 분쟁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을 제공하면서, 절차적 유연성,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 비밀 유지를 보장한다. 또한 국제조정은 중재인이 실정법, 업계의 관행, 형평과 선 등의 판정 기준을 활용하여 판결과 같이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리는 국제중재와 달리 당사자 스스로가 조정인의 지원으로 당사자들이 계약 또는 법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들의 분쟁의 우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절차이므로 당사자들의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다양한 (사업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경쟁의 틀을 벗어나 상생의 분쟁 해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정 특유의 장점이 발휘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IPO조정중재센터의 ADR 사건통계(2009-2018)를 보면,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비율은 70%로, 중재를 통한 해결 비율(40%)과 비교하여 훨씬 높다.

지식재산권 분쟁의 당사자가 국제조정을 이용하여 국제적 화해 합의에 도달하여도 그 합의의 국제적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아 국제조정은 국제중재와 비교하여 덜 선호되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조정과 중재를 결합하여, 조정을 통해 도달된 합의를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절차에 회부 하여 그 내용을 중재재판부의 중재판정 형식으로 기록하는 방식이 외국에서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하나의 해결 옵션으로서 제시되었으나⁸²⁾ 2020년 9월 12일 싱가포르조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국제조정도 국제중재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그 화해 합의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독자적으로 마련되었다.⁸³⁾

한국기업이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의 당사자로 국제조정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WIPO 국제조정 절차를 이용하거나 국제상업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와 같은 외국의 국제조정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한국의 위상이 지식재산권 보호국으로 바뀌고, 지식재산권 침해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으로 인식할 때 지식재산권 분쟁을 포함한 국제상사분쟁을 조정하는 민간형 국제조정기관을 설치하고, 국내적,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 해결 비용을 줄이고, 상생의 분쟁 해결 문화를 조성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WIPO의 국제조정제도과 그 활용 경험은 국내에서 국제조정 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는

82) 조정으로 도출된 화해 합의는 중재판정이 아니므로, 1958년 뉴욕협약과 같이 국제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 그러나 조정의 결과로 도출된 화해 합의의 내용을 중재재판부의 중재판정으로 기록한다면, 동 뉴욕협약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국제적으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83) 이솔잎, “법무부, ‘싱가포르 조정 협약 이행 법률 제정 TF’ 발족”, 『법률신문』, 2021. 3. 10. 자., 접속일 2021. 4. 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852>.

데 유용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조정’의 목적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고, 조정인은 그러한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국제조정기관은 조정 규칙과 전문분야별 국제조정인 명부를 갖추고, 조정절차 전반의 사무국 서비스(절차 및 규칙 안내, 조정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선정 지원, 당사자와 조정인 연결/연락 지원, 사건관리, 수수료 포함 재정관리, 회의실 제공, 번역, 통역 또는 기타 사무국 서비스 등)를 제공한다. 셋째, 조정 규칙은 주로 규칙의 적용 범위, 조정개시, 조정인의 임명, 당사자 대리 및 회의 참가, 조정수행, 조정인의 역할, 비밀유지, 조정종결 등 조정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과 행정수수료, 조정인의 수수료, 보증금, 비용 등의 재정적 측면과 관련된 규정, 책임의 배제, 시효중단 등과 같은 법적 규정을 포함한다. 넷째, 조정은 당사자 간의 사전/사후 조정 합의(조정에 회부하기로 한 합의에 관한 언급, 분쟁에 관한 기술, 조정장소, 조정에 사용될 언어, 조정조건 및 절차에 적용 가능한 규칙 등 포함) 또는 일방 당사자의 조정요청서 제출과 상대방의 동의/참가로 진행된다. 다섯째,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합의한 절차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기관의 조정 규칙을 따른다. 여섯째, 조정은 비밀유지가 원칙이므로 조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조정인, 당사자, 대리인, 전문가 등)은 조정의 비밀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조정 참여 전에 비밀유지 협약서에 서명한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인과 당사자는 조정절차 중에 있었던 대화나 기록, 인정, 일방의 화해 제안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 등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일곱째, 조정비용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며, 조정기관은 분쟁가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조정인의 수수료도 또한 시간당, 일당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행정수수료와 조정인의 수수료는 상한가 액, 하한가 액을 설정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조정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조정의 장점 및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국제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ADR기본법을 제정하고, 민간형 국제조정기관 육성 및 지원하며, 법조인을 포함하여 국제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정인을 양성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참고문헌

- 고윤석, 「지식재산권 국제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김용길, “지식재산권분쟁의 재판외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9.
- 김상찬 · 이언주, “지적재산권 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법학연구」 제47권, 2012. 8.
- 김홍석,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ADR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박노형,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법률 제정관련 제언”, 「법률신문」, 2021. 4. 19. 자, 접속일 2021. 4. 26,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69339>.
- 손승우, 「저작권 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이로리, “EU조정지침의 이행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제50권, 2016.
- 이솔잎, “법무부, '싱가포르 조정 협약 이행 법률 제정 TF' 발족”, 「법률신문」, 2021. 3. 10. 자, 접속일 2021. 4. 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852>.
- 이순규, “기업간 국제분쟁 국제조정으로 해결...국제조정센터(KIMC)출범”, 「법률신문」, 2020. 10. 27자, 접속일 2021. 4. 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5270>.
- 이주연,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의 활성화 방안 - 국내 ADR기관의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3. 6.
- 이재민, “국제조정을 통한 합의서 집행협약의 도입과 법적 쟁점”,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11.
- 최경수, 「국제지식재산권법 (개정판)」, 한울, 2017.
- 최송자, “지적재산권분쟁의 중재적격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1. 8.
- 하홍준 외 4인, “지적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09.
- De Castro, Ignacio · Toscano, Leandro · Gadkowski, Andrzej , “An Update on International Trends in Technology, Media and Telecom Dispute Resolution,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53 les Nouvelles 116, June 2018.

- EUROPA,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 ICC, The ICC Intellectual Property Roadmap(13th edition), 2017.
- ICC, ICC DISPUTE RESOLUTION 2019 STATISTICS, 2020.
- U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2018
-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2018.
- WIPO, Results of the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International Survey on Dispute Resolution in Technology Transactions, 2013.
- WIPO, WIPO Guide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p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and Court, 2018.

ABSTRACT

Recent Trends and the Us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Focused on the WIPO Mediation

YI, LORI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ully meets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 such disputes in terms of their needs for neutral forum of dispute resolution, cost-effective settlement, objective opinion of relevant experts, internationally enforceable solution. In addition, as a procedural flexibility, respected self-determination of the parties, exploration of possible creative business solutions, maintenance of business relationship and confidentiality of mediation are major characteristics which can be competitively differentiated from the lawsuit or arbitration.

The settlement agreement as a result of the WIPO mediation has an effect of contract while the settlement agreement as a result of most domestic ones has an effect of judicial reconciliation which can be domestically enforced. The latter is not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which establishes a harmonized legal framework for the right to invoke settlement agreements as well as for their enforcement. The WIPO international mediation system and its experience may be a good reference for Korea to take an initiative to establish a globally competitive international mediation system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ey Words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Singapore Convention,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Mediation Rules